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4. 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.4.1. 이홍민 의원 외 10명

나. 회부일자 : 2019.4.1.

다. 상정일자 : 제2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9.4.3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이홍민 의원】

가. 개정이유

마포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지역서점 정의(안 제2조)
-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

-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(안 제5조)
-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(안 제6조)
- 지역서점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홍보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제정조례안은 이흥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,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- 본 제정안은 마포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음.
- 주요내용으로는
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바 “지역서점”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을 명시함.
-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구청장은 지역 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함.
-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.
- 안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내용으로 구청장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

소기업 또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함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도서정가제 시행 및 도서구매자의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변화됨에 따라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의 매출이 늘고 있는 반면, 지역서점의 매출은 급격히 줄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

○ 마포구 도서구매 예산을 관내 지역서점에서 지출하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서점이 단순 도서를 판매하는 곳을 넘어 구민에게 생활문화를 공급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.

○ 다만, 본 조례안이 시행되더라도 사업 추진 시 관계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, 지역서점이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